

공공재로서 공인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

최호택

배재대학교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교수

Occupational Values and Validity of Certified Investigators as Public Goods

Ho-Teak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ai Chai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의 다양한 선행연구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은 공공재로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둘째, 탐정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신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인탐정제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공인탐정, 민간조사, 공공재, 직업가치,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occupational value an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accredited detective system that is not the only OECD countr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developed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review of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in related field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tectives have various social values as public goods. It is basically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secure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This can further enhance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in state institutions. Second, as detectives are already legally recognized in other countries, they will be able to fulfill their social roles as new jobs through cultivation. Next, in order to advance research in the field of accredited detective systems,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should be more active.

Key Words : Public detective, Private investigation, Public goods, Occupational value, Qualitative research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2019), PaiCha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o-Teak Choi(htchoi@pcu.ac.kr)

Received December 6,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9,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경제규모의 성장, 물질적 번영, 다원주의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은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 중시, 수평적 변화, 분권적 사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전반적 영역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즉,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공공서비스를 양적인 수준을 넘어 질적으로도 우수하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인력부족, 재정부족 등이 현실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을 재정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수부담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정책결정자에게 근원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딜레마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즉, 공공서비스 확대는 국가재정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므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공공서비스의 감소 역시 근본적 국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현상은 근원적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탐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1,2].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탐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는 민간경비업(탐정업)은 외국시장에 개방하였다. 실제,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컨설팅 등의 업종을 통해 탐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현실로는 관련법안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탐정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탐정관련 회사들은 업종 이름만 바꾸어서 탐정영업을 하고 있다[3,4]. 즉, 음지에서 탐정업이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만큼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로는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탐정이 음성화되면서 국가기관은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

회적 수요에 따라 탐정은 필요한데, 직업으로써의 국가기관의 불인정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접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OECD국가들은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전문적 조사와 정보수집활동을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기업들이 권리를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공공탐정제도(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공약정책으로 공공탐정제도 도입이 정책의제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재로서의 공인탐정제도가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탐정이 가지는 직업적 가치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재로서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질적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2. 탐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탐정의 의의

탐정(private investigator)의 직업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탐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탐정은 근원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가 재화를 지불하여 계약을 통해 대리인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채취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탐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가차원과 연구자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국가별 정의이다. 프랑스에서는 “탐정이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탐정업법의업무에의적정화에관한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 제2조 1항에서 탐정업무를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할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등 기타 이러한 것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민간조사원은 사적행동과 사실에 관한 정보와 증거의 획득과 제공,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장의 요청에 따른 추적 가능한 범죄의 조사, 축제, 숙박시설, 전 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감시 등에 대한 업무를 사인 또는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특정인물, 혹은 그 활동이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이나 재산이 멸실한 상황 혹은 그 수단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감시, 조회,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5,6].

둘째, 연구자들의 정의이다. 강영숙(2006: 14)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다[7]. 나영민(2006: 58)은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하여 사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하였다[8]. 손상철(2011: 139)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다[9]. 또한 조성구(2012: 6)는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10]. 이승철(2011: 124)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 의뢰인에게 보수를 지급 받아 특정 사람에 대한 소재 및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박동균·김태민(2012: 108)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영리 기업이 의뢰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보를 찾아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탐정의 개념을 통합해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계약관계에 의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람이다.

2.2 탐정의 업무영역

다음으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영역에 근거하여 직업으로써의 탐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탐정(Legal Investigator)이다. 법률탐정은 주로 소송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관련자료 수집, 증인확보, 조사를 위한 증거주집, 법정증언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 업무로는 법률서류작성, 증인출석 대상자에 대한 면담, 민사소송자료검토, 등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은 탐정을 중요한 협력자로 인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탐정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교류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탐정의 조사결과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기업탐정(corporate investigator)이다. 기업탐정은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수행한다. 핵심적 업무로는 기업에서 발생한 내·외부에 대한 불법적 문제에 대한 조사, 회사 내의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문제에 대한 조사, 회계부정, 지적재산권 침해구제나 조사,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등이다. 이러한 기업탐정의 주된 업무는 국가기관이 기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적인 일들을 모두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서 탐정이 활동하는 분야이다.

셋째, 재정탐정(financial investigator)이다. 회계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탐정이 횡령, 사기, 배임 등의 사건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업무분야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재정관련 정보 수집, 법원에 의해 사기, 절도혐의가 확정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제활동, 자금소재파악과 추적, 사기·횡령 피의자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자금거래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보험탐정(insurance investigator)이다. 보험탐정은 보험사기, 사고재해의 합법적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영역에서 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연간 67조원으로 세계 7위의 수준이다.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보험과 관련된 범죄도 상당한 수준이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경찰인력으로는 보험 분야의 범죄나 피해자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또한 손해보험사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인원이 부족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면, 공인탐정과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다섯째, 경비탐정(store investigator)이다. 경비탐정은 백화점·대형마트·지하상가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절도

범이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거나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절도범을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 관련 시설 보호 및 방호업무, 보안보고서 작성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탐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거나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째, 사이버탐정(cyber investigator)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범죄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자료수집과 증거수집을 위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구와 분석, IP를 추적업무, 컴퓨터에 대한 외부침입감시 및 조사업무 등이다. 현재에는 정보보안업체들이 사이버보안원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범죄 수에 피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분야에서의 업무도 탐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검토

탐정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연구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오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탐정이 제도적으로 공식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탐정에 관한 연구는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기존의 탐정과 관련된 주요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훈(2018)은 탐정제도를 위한 입법화 노력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를 논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공인탐정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온 분야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3]. 정덕영(2017)은 경찰기관,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의 관점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민간경비의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적 방안으로 하나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4]. 이준복(2017)은 테러방지의 관점에서 공인탐정제도의 관한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는 테러방지와 공인탐정에 관한 비교를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13]. 김순석(2017)은 공인탐정제도를 업무영역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인탐정제도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1].

박종훈·성도경(2011)은 국가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탐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처럼 범죄와 같은 개인권익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범죄수사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차원에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현주(2011)은 인터넷중독의 관점에서 치안업무의 한계에 관한 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4]. 특히,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탐정제도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 법률조력자, 정보와 수사기법에 관한 은퇴자들을 수사전문가로서 자원화하여 직업 창출을 강조하였다.

강영숙·김태환(2006)은 미국탐정제도라는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에서 탐정제도가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실제 운용실태 등을 소개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탐정업이 수요와 고용 등의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직업적 전망을 주장하였다[6,15]. 이상훈(2009)은 공인탐정제도의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입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공인탐정제도가 주는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인탐정에 관한 연구는 입법화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 의견들을 직접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주류였다. 이 연구는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공공재로써 탐정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4.1 공공재로써의 탐정업

탐정이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탐정이 직업으로써 가지는 의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공동화 이론(vacuum theory)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이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며, 그러한 경찰서비스의 공백상태(Gap)를 메우기 위해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탐정업무 역시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에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중에서 경찰업무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olicing)와도 연결된다[2]. 이런 관점에서 국가기관과 민간부문이 거버넌스 형태로 탐정업무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둘째는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이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국가기구로서 경찰의 역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체제 전반의 유지작용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거나 국가 이외의 사회집단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개인이나 조직스스로가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본다[2]. 따라서 보험사기의 조사나 실종아동의 소재지 조사 등의 업무는 그 성격상 다분히 개인의 안전이나 사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를 국가경찰에 완전히 위탁할 수는 없고,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탐정제도를 통한 스스로의 문제해결방법이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생산이론(co-production theory)이다.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서비스를 포함하는 국가서비스를 담당 국가기관과 시민 내지 단체가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종래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경찰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이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종래에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던 국민이 생산자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게 되었다[2,3]. 탐정제도는 시민참여의 국가역할의 적극성이라고 하겠다.

4.2 국가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한계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탐정합법화는 국가기관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사회공동화이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경찰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 인력부족, 예산부족, 공공육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및 재산보호의 임무를 전적으로 경찰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이 국민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음정적인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이러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업무의 과중성도 해결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은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 자체가 가지는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절대적 피해자만은 양성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의료사고를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합법성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사회적분쟁의 해소를 물론이고 국가역할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공인탐정제도는 사회적 투명성마저도 높여줄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협력치안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사회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전문화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 사법기관도 법률적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정보수집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건들이 한정된 수사기능에서 처리되고 있어 국민들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해마다 찾지 못하는 실종사건들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경찰이 보여주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보다 매우 효과적인 국가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사회적 신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유사탐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데, 탐정활동이 불법이다 보니, 지나치게 높은 수입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조사행위, 신상정보유출, 도청, 불법추심 등과 같은 일들이 일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신뢰의 저하시키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협박과 같은 범죄마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유사탐정행위를 모두 수사하여 잡을 수 있는 자원적 한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범망을 피한 사각지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게 된다면 유사탐정행위를 통한 불법행위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국가가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민들의 자기권리 방어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영역에서의 분쟁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ICT, 기업경영 등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증가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도 없으며, 설령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자원 소비를 가지고 오게 되고, 국민들의 욕구마저도 충족시켜주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사회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인탐정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공공재로서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공인탐정제도는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시켜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학술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관점에서 얻은 시사점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탐정에 관한 접근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탐정제도가 필요성의 공공재의 논리와 가치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탐정제도가 기존의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보호의 영역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재의 보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접근한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양적연구의 논리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실무적 정책적 차원에서 얻은 시사점이다. 기존의 탐정활동은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공인탐정제도의 합법화는 공공재의 대체재로서 합법화 된다면 음성적 활동을 양성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합리적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용절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미가 있다. 탐정활동의 합법화는 국민들의 국가기관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탐정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증가하는 고소·고발을 통한 국가기관의 과중한 업무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재로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주제는 연구의 특성상 질적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질적연구가 가지는 문헌연구와 논리의 다양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논리적 상황에 접근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S. Kim. (2016). Study on the Legislative Strategies for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5(4), 1-26.
- [2] S. H. Lee. (200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20, 249-270.
- [3] S. H. Lee. (2018).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Work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s a New Job.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7(4), 185-208.
- [4] D. Y. Jung. (2017).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Det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6(4), 163-190.
- [5] I. S. Jung & J. Y. Park. (2009).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21, 135-154.
- [6] Y. S. Kang & T. H. Kim. (2006).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2, 25-50.
- [7] Y. S. Kang. (2006).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8, 327-357.
- [8] Y. M. Na. (2007).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Journal of police science*, 7(1), 200-219.
- [9] S. C. Son. (2011). Study on Regulation Plan and Competent Authorities on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7, 129-162.
- [10] S. G. Cho & T. M. Kim. (2012). A Study on the establish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4(2), 241-268.
- [11] S. C. Lee. (2011). 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7(2), 122-128.
- [12] D. K. Park, T. M. Kim. (2012). A Study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1(4), 103-125.
- [13] J. B. Lee. (2018). A Legal-Institutional Discussion on

Anti-Terrorism and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Korean terrorism studies Review*, 11(1), 5-32.

- [14] H. J. Sin. (2011).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1(1), 139-165.
- [15] H. B. Cho. (2006).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Political Sugges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8, 271-296.

최 호 택(Ho-Teak Choi)

[정회원]



- 2000년 7월 : 英國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행정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4년 5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소장

- 2009년 5월 ~ 현재 : (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원장
- 2015년 9월 ~ 2017년 9월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 관심분야 : 행정학, 지방자치, 탐정
- E-Mail : htchoi@pcu.ac.kr